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7. 5 선고 2021가단537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웅, 류기현

피고(선정당사자) D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5. 25.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선정자 G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5. 25. 접수 제225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선정자 G은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5. 25. 접수 제225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은 2020. 2. 13. 사망하였고, 망 H의 상속인들로는 장남 I, 차남 F와 딸들인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가 있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피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20. 4. 21. 수원지방법원에 I,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2. 15. F는 원고들에게 각 362,569,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I는 원고들에게 각 60,966,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7778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F는 원고들의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고 난 이후인 2020. 5. 25. 망 H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13.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에게 2020. 5. 25.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3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선정자 E의 배우자인 선정자 G에게 2020. 5. 25.자 근저당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4항 기재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라. F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F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계약 체결 전인 망 H의 사망 당시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F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 또는 근저당등기를 각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F에게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는 이 사건 가등기의, 선정자 G은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F는 원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와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가 위와 같은 협의에 호의적이었는데 반하여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F는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해준 것인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선정자 G은 F에게 생활비 등으로 81,291,26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계약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는 원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D, E에게 유류분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선정자 G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피고들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선 정 자 명 단

- 1. D
 - 2. E
 - 3. G
- 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당진시 전 3490㎡
2. 당진시 전 1858㎡
3. 당진시 임야 1289㎡
4. 당진시 임야 16959㎡. 끝.

